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김종무 의원(1명)
찬 성 자 :고병국, 김재형, 김제리,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이성배,
이영실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최정순,
한기영, 황규복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으로,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, 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여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기여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로 정하고, 공공기여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9조의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6(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) ①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.

②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9조의6(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) ①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토지가치를 말한다.</u></p> <p><u>②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70퍼센트를 말한다.</u></p>